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 연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활한 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운용방식 바꾸면 지급 중단 없어

언제, 얼마나... 사회적 타협 필수

기금 바닥이면 연금 못받나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 기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난다.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 막대한 적립금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60년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지급액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 상품과는 달리 애초 제도 설계 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2011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연금보험료로 낸 금액 대비 급여액 비율, 즉 '수익비'는 최하위 소득자(월평균소득 23만원)는 4.3배, 평균 소득자(월평균소득 188만원)는 1.8배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자신이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적지 않다. 최상위 소득자의 수익비도 1.3배에 달한다. 보험료를 거둬서

2060년 재원 고갈 불가피

적립식→부과식 전환 해결

가입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더 많은 연금으로 되돌려주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고갈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면 쌓아놓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 일반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에 국민연금을 불신하면서 탈퇴하고 싶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요 근거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운영할 때 보험료를 거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그것이다.

적립방식은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일정 기간 차곡차곡 쌓고 그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매년 근로자가 연금급여로

지급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후세대에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 현세대에게 지급하는 쪽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공적연금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많은 기금을 쌓아두었다. 제도성숙과 더불어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바뀌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거의 기금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금지급에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두려움과 우려가 있지만, 결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잘라 말하는 이유다.

비록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사회적 타협을 거쳐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지급의 중요한 재원인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는 데다, 아직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단계여서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도 많고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제도 유지 위해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서 찬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부분은 그 부담이 어느 정도며 누가 얼마만큼 짊어질 것인가이다. 소득대체율은 지금껏 내리막길만 걸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은 60%로, 다시 40%로 크게 떨어졌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40년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말한다.

이들처럼,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온 종계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가입자는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이 70%→60%→40%로 하락한 것은 연금 수령액이 월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시 40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말이다.

게다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소득대체율 40%나 50%나

2060년 이후 지속 불가능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총당할 뿐으로,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여야는 이처럼 국민의 최소 노후 보장장치로서 공적연금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 소득대체율을 정상화하는데 호흡을 맞췄다. 야당은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더라도 부담은 그다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야당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공론화 절차 없이 무턱대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이 내야 할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5.1%에서 최대 18.85%로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뛰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복지부의 주장대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소진하지 않으려면 17년치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올려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린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든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은 현행 9%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상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총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별로 없다. 보험료를 조기에 인상하거나 최후 보루인 세금을 투입해 기금고갈 예상시점인 2060년을 넘어서도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방안이다.

따라서 선택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 국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 그런데도 선진국이 연금제도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수한 사회적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합뉴스



노인들 “왜 줘다 뺐나” 노인단체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회원들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꽃을 줘다 뺐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빈곤노인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 뒤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정부의 행태를 비꼬아 이 같은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말정산법 11일까지 국회 통과 안되면 재정산 대혼란...5월에 환급 못 할 수도”

기재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할 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5월 환급이 어려워지고 극심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납세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에는 최소한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다.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재정산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역시 시 최소한 오는 11일 이전에 분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히 회계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할수록 재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1일 이후 통과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이번 보완대책으로 자녀 및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 200만 명은 신고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지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측은 “자녀 및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국세청이 안내문을 전달하는 데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데, 5월 중순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내문을 5월 말까지 수령하게 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5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지면, 개정안도 수정해야 하고 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7월
광주에서 함께 해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기간 2015. 7. 3. ~ 7. 14. (12일간)
장소 광주·전남·전북일원 경기장
규모 170개국 20,000여명
종목 21개 (정식 13 / 선택 8)